

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·대상·지역 등 고시

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강본류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시기·대상·지역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19일

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

1. 유어행위 제한 시기 :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2. 유어행위 제한 대상
 - 가.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
 - 나. 자망어업, 투망어업, 연승어업, 정치망어업
 - 다. 동력 및 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. 다만,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는 제외함
 - 라. 떡밥·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 - 마. 훔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훔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
 - 바. 은어 등 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어종을 포획, 채취하는 행위
 - 사.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
아.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
자. 팔당댐 방류량 12,000m³/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

3. 유어행위 제한 지역

가. 위치

- 1)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~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
- 2) 서울특별시내 한강교량
- 3)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)

나. 금지 지역 : 다음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지역

구분	연번	구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고
			구분	위도	경도	
뚝섬 1지역	1	자양2동 잠실수중보 ~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38"	127°05'20"	
			종점	37°31'36"	127°04'38"	
뚝섬 2지역	2	청담대교 북단 교량 ~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46"	127°03'57"	
			종점	37°32'06"	127°03'08"	
뚝섬 3지역	3	서울숲 회전 고가시설 ~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2'29"	127°01'48"	
			종점	37°32'40"	127°01'53"	
이촌 1지역	4	중랑천 합류부 ~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2'23"	127°01'08"	
			종점	37°32'45"	127°01'49"	
이촌 2지역	5	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~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사이의 전망데크	시점	37°31'57"	127°00'47"	
			종점	37°32'01"	127°00'48"	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이 촌 3지역	6	노들섬 전체,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(거북선선착장) ~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14"	126°57'39"	
			종점	37°31'01"	126°58'11"	
밤 섬 지역	7	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~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2'34"	126°54'57"	
			종점	37°37'01"	126°56'51"	
망 원 1지역	8	양화대교 북단 교량 ~ 합정동 양화 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2'58"	126°54'09"	
			종점	37°32'47"	126°54'26"	
망 원 2지역	9	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~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3'31"	126°53'33"	
			종점	37°33'21"	126°53'37"	
난 지 1지역	10	홍제천교 ~ 성산대교 북단 하류 1,300m (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3'48"	126°52'55"	
			종점	37°33'33"	126°53'32"	
난 지 2지역	11	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 (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) ~ 가양대교 북단 하류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 면 (생태습지원 연결한 내수면 포함)	시점	37°34'32"	126°51'43"	
			종점	37°34'12"	126°52'13"	
잠 실 지 역	12	잠실5동 잠실수중보 ~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14"	127°05'38"	
			종점	37°31'08"	127°05'20"	
잠 원 지 역	13	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(리버시티) ~한남대교 남단 하류 1,000m(요트 클럽 하류10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05"	127°00'26"	
			종점	37°31'49"	127°01'18"	
반 포 1지역	14	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(전망테크)~하류 500m(임시선착장)사 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0'47"	127°00'04"	
			종점	37°30'33"	126°59'36"	
반포 2지역	15	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(서래섬 하류 100m) ~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0'24"	126°59'08"	
			종점	37°30'20"	126°58'40"	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흑 석 지역	16	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(원불교 회관 앞) ~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0'34"	126°57'55"	
			종점	37°30'55"	126°57'11"	
여의도 1지역	17	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~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1'12"	126°56'38"	
			종점	37°32'01"	126°55'21"	
여의도 2지역	18	여의도동 셋강 내수면 전역(상.하류 합류부 및 연결한 내수면 포함)	시점	37°31'11"	126°56'41"	
			종점	37°32'04"	126°54'37"	
양 화 1지역	19	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(여의도 셋강 하류 합류부)~당산철교 남단 60m(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)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2'06"	126°54'34"	
			종점	37°32'17"	126°54'16"	
양 화 2지역	20	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(양화선착장) ~ 안양천 합류부 상류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3'12"	126°52'45"	
			종점	37°32'41"	126°53'37"	
양화3. 강서1 지역	21	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~마곡철교 남단 하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3'20"	126°52'28"	
			종점	37°34'46"	126°49'59"	
강 서 2지역	22	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~행주대교 남단 상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35'27"	126°48'29"	
			종점	37°35'06"	126°49'12"	

* 금지 지역 양측(시점, 종점)에 낚시안내판 설치

4. 유어행위 제한의 예외

가. 시장이 생태계의 보전·복원, 학술조사, 조수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

5.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

가. 벌칙의 근거

- 1)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
- 2) 「하천법」 제46조 및 제98조제2항
- 3)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9조 및 제55조제2항제1호
- 4)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8조 및 제20조

나. 벌 칙 :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연번	금지행위	과태료금액 (단위:원)		
		1차	2차	3차
1	유어행위 금지지역에서 낙시행위자 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위반자)	500,000	700,000	1,000,000
2	은어포획, 낙시대4대 이상, 갈고리 낙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위반자)	500,000	700,000	1,000,000
3	어분, 떡밥 사용등 제한사항 위반자 (「하천법」 제46조 위반자)	1,000,000	2,000,000	3,000,000
4	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낙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(「낙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9조 위반자)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
6. 기타

유어행위의 시기·장소·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(<http://hangang.seoul.go.kr/>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(02-3780-07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